



## | 환경영향평가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영향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고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 Q 1** 폐기물처리시설(최종매립시설)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을 완료한 상태로....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협의된 환경영향평가내용 [사업면적 : 62,000평, 매립용량 : 310만m<sup>3</sup>]
  - 변경할 사업내용 [사업면적 : 62,000평(변경없음), 매립용량(추정) : 기 협의된 310만m<sup>3</sup> 보다 40%이상 증가됨]

- A 1**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매립용량 310만m<sup>3</sup>)의 매립용량 40% 증가시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초 사업규모 보다 30%이상 증가되므로 재협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처리시설 병행사용 가능여부

- Q 2-1**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파쇄시설 등 시설장비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이 유사하므로 동 시설을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중복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법령근거 및 위법사항 여부는?

- Q 2-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재생골재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발생되는 점토점결주물사, 분진, 광재 등을 혼합하여 매립(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A 2-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3호 비고 가의 규정에 따라 사무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A 2-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의2의 규정에서는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무기성오너는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여 해당 용수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하여

**Q 3**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매년 측정하고 있는 유지기준과 2년에 1회에 한하여 측정하고 있는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은 1개업소당 2개지점 이상 선정하여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1개지점은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나머지 1개지점은 기준이하로 측정되고 또한 2개지점 평균치가 기준치 이하로 산정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각 측정지점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3**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2개 지점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그 평균값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스스로 측정하여(자가측정)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여부

**Q 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아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작업시간 연장 혹은, 작업량의 증가로 폐수 발생량이 증가한 경우(약 2배증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종별의 변동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도 없으며 단순히 폐수량만 증가하여 전량 위탁처리하고자 할때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4**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 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VOC 규제관련

**Q 5** 당사는 핸드폰관련 도장회사입니다. 근래에 도로관련 및 도장에 대한 VOC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VOC관련 법안 내용이 무엇이 있고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발효되는지? 도장 또는 도로관련 VOC규제가 현재 어떠한 법령과 규제가 있고 차후 어떠한 법령이 개정?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5**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장시설에 관한 규제로 총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여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귀 사업장의 도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된다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VOC 함량규제는 수도권공급 도료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장시설에 관한 규제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http://www.me.go.kr) → 정보마당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 위탁처리 가능여부

**Q 6** 병원시설로서 일일 폐수처리량은 약  $33m^3$  입니다.(허가증상 폐수처리능력  $220m^3/일$ ) 실험실페수, 세탁폐수, 기타폐수 등을 전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환경법에서는  $50m^3$  미만 발생폐수 중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 가능한 폐수를 위탁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탁폐수나 기타 일반폐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실험폐수는 물리,화학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탁폐수나 기타 일반폐수 등 생물학적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도 위탁가능한지요?

**A 6**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중 물리적, 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와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그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1일  $50m^3$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해당합니다.